

소규모 합병 공고

주식회사 세아특수강은 주식회사 세아메탈과 2024년 1월 2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래 -

- 합병방법: 주식회사 세아특수강이 주식회사 세아메탈을 흡수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함
- 합병비율: 주식회사 세아특수강 : 주식회사 세아메탈 = 1 : 0
(주식회사 세아특수강은 주식회사 세아메탈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,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에 의함)
- 소멸회사의 현황
 - 상호: 주식회사 세아메탈
 - 본점 소재지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80(웅남동)
- 합병기일: 2024년 3월 31일
-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
-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행사절차: 2024년 2월 7일 현재 주식회사 세아특수강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양식(명부주주/특별계좌) 또는 각 증권회사(실질주주/일반계좌)의 양식에 따른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
 - 제출기간: 2024년 2월 7일 – 2024년 2월 21일
 - 행사방법 및 장소
 - 행사방법: 2024년 2월 21일까지 주식회사 세아특수강 또는 각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
 - 장소: (주식회사 세아특수강에 제출하는 경우)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0(장흥동)
 -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 -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
